

---

#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학생용]

---

영 남 대 학 교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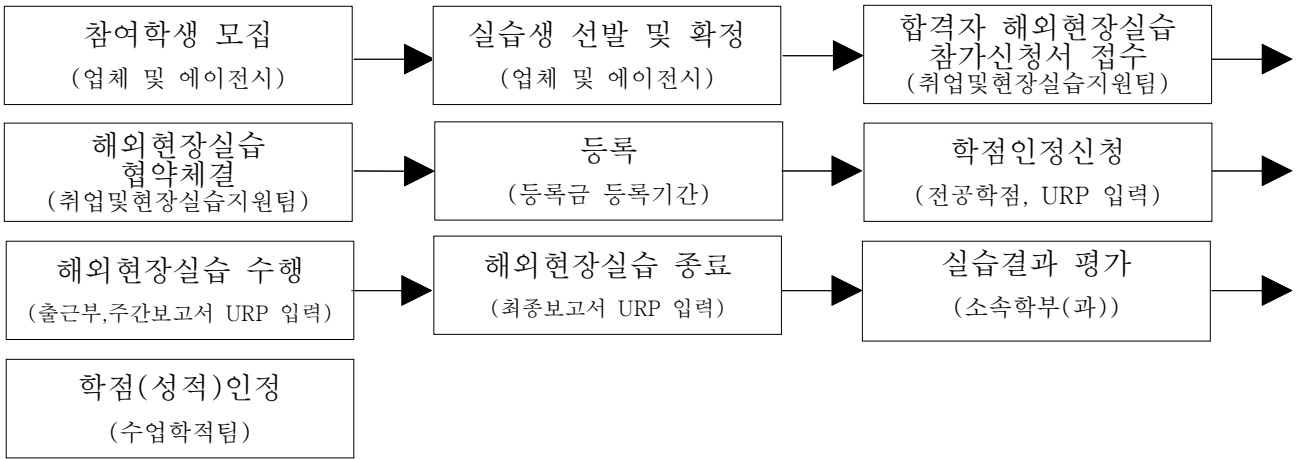
<b>I. 현장실습 운영절차</b> .....	1
1. 해외현장실습이란 .....	1
2. 운영절차 .....	1
3. 모집기간 및 실습가능기간 .....	1
4. 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1
<b>II. 참가 자격</b> .....	3
1. 신청자격 및 학적상태 .....	3
2. 해외현장실습 신청 불가능자 .....	3
<b>III. 학점인정 및 성적 부여</b> .....	3
1.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	3
2. 학점인정 .....	3
3.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신청시 주의사항 .....	5
<b>IV. 해외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금</b> .....	5
1. 해외현장실습 지원금 .....	5
2.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6
3. 지원금 지급 시기 .....	6
<b>V. 해외현장실습 등록금(수강료) 납부</b> .....	6
1. 단기 및 중기 해외현장실습 참가자 .....	6
2.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 .....	6
3. 납입금(수강료, 등록금)의 반환 .....	6
<b>VI. 기 타</b> .....	7
1. 해외현장실습 불인정 및 취소 .....	7
2. 해외현장실습 제외 기업(기관) .....	7
<b>VII. 유의사항</b> .....	8
1. 해외현장실습 이수에 관한 유의사항 .....	8
2. 해외현장실습 중 유의사항 .....	8
<b>VIII. 문의처</b> .....	9
<b>VIII. 해외인턴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b> .....	9
[별첨 1] 해외현장실습 기간조건표(1) .....	11
[별첨 2] 해외현장실습 기간조건표(2) .....	12
[별첨 3] 학기 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	13
[별첨 4] FAQ .....	14
[별첨 5]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	15
[별첨 6] 영남대학교 해외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	21

# 1. 현장실습 운영절차

## 1. 해외현장실습이란

해외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 기간 해외에 소재하는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해외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

## 2. 운영절차



## 3. 모집기간 및 실습가능기간

학기	해외현장실습과정	모집기간		실습가능기간 (별첨 해외현장실습 기간조건표 참조)
	대학공통	기업(기관)	학생	
계절제	단기 해외현장실습	상시	상시	4주 ~ 8주
	중기 해외현장실습			
학기제	장기 해외현장실습	상시	상시	12주 ~ 20주

## 4. 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가. 제출서류

-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오프라인) : 소정양식
- Job Offer Letter 혹은 Training Offer Letter
- 해외현장실습(인턴) 비자 사본 제출 (Ex. 미국 J-1 비자 사본 등)
- 여권사본
- 해외현장실습 보험 가입증서 (미국 파견자 외의 경우만 해당)

나. 해외현장실습 절차

구분	작성	내 용
실습생 (학생)	① 해외현장실습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인턴 최종합격자는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으로 연락 및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li> <li>• 장기 해외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 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li> <li>※ 졸업예정자가 장기 해외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li> </ul>
	② 개인정보동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 동의서 제출
	③ 학점인정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RP-현장실습관리-학점인정 신청</li> <li>현장실습담당업무 및 전공인정신청사유 입력(전공인정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필히 입력)</li> </ul>
기업(기관) (관리자)	① 회원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해외현장실습 참여 기업 전체</li> <li>• 홈페이지 메인화면(우측상단) 회원가입 - 기업회원 로그인</li> <li>※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해외기업에 대해 임시 사업자등록번호 부여 후 로그인</li> </ul>
	② 해외현장실습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 [기업관리] - [해외현장실습 신청관리]에서 신청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대리 입력)</li> </ul>
	③ 실습생 선발 및 해외현장실습 전자협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 [기업관리] - [해외현장실습 진행관리] - 선발/협약 관리에서 실습생 최종 선발 및 협약 체결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대리 입력)</li> </ul>

다. 해외현장실습 제출서류

구분	작성	내 용
실습생 (학생)	① 출근부	출근부 입력(URP-현장실습관리) ※ 해외현장실습 기간중 출근부 작성
	② 해외현장실습 주간보고서	매주 주간보고서 작성(URP-현장실습관리) ※ 실습기간 지정 : 주단위로 작성 (평일 5일 기준 기간입력)
	③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 작성(URP-현장실습관리) ※ 해외현장실습 전반적 내용, 느낀 점, 취업연계사례, 건의사항 등 작성
	④ 설문조사 작성	참여 학생 설문조사 작성(URP-현장실습관리)
	⑤ 실습종료 후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근부 전체 (해외현장실습 종료 후 URP에서 출력하여 실습기관 담당자 서명 날인)</li> <li>• Intern Evaluation Report(실습기관 담당자 서명 날인, 소정양식)</li> <li>• 출입국 사실증명서(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가능, 공인인증서 필요)</li> <li>• 급여표(실습기관 발급 서식)</li> </ul>
	⑥ 해외현장실습 이수확인	해외현장실습 완료 후, 해외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출력 가능(Pass한 경우)
학부 (학부장)	① 전공인정심사 및 학점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심사(전공학점)</li> <li>• 실습생 실습종료 후 학점인정</li> </ul>
기업(기관) (취업및현장실습관리팀)	① 출근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습 종료일에 실습생 출근부 작성 완료 후, 기업 관리자 학생 출근부 검토 확인</li> <li>• 홈페이지-[기업관리]-[해외현장실습 진행관리]</li> <li>•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출근부 확인</li> </ul>
	② 해외현장실습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이 담당자로부터 받은 평가표(Intern Evaluation Report) 입력</li> <li>• 홈페이지-[기업관리]-[해외현장실습 진행관리]-[실습생평가] 작성</li> </ul>

## II. 참가 자격

### 1. 신청자격 및 학적상태

가. 신청학년 :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단, 미국 J-1 비자 인턴은 5개 학기 이상 이수자)

나. 학적상태 : **재학생(해외현장실습 학점취득학기 기준 학적 상태)**

※ 휴학생의 경우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불가 및 지원금 없음.

### 2. 해외현장실습 신청 불가능자

가) 우리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등)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졸업예정(수료)자 원칙적 신청불가

단, 해당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현장실습 학점 취득 완료 가능 한 자

2월 졸업예정자	해당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실습종료 및 실습보고서 작성이 완료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8월 졸업예정자	해당년도 6월 30일까지 실습종료 및 실습보고서 작성이 완료 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다) 국내외 현장실습으로 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32학점 이상 이수자

라) 학·석사연계(5년 과정) 대상자는 장기 해외현장실습을 이수할 수 없음

마) 외국인 유학생

## III. 학점인정 및 성적 부여

### 1.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 해외현장실습 기준 : 주 5일, 일 8시간

대학공통	실습기간	인정학점	성적평가
단기 해외현장실습	4주(160시간) 이상	대학공통 : 3학점	이수 P(Pass) / 미이수 F(Fail)
중기 해외현장실습	8주(320시간) 이상	대학공통 : 6학점	
장기 해외현장실습	12주(480시간) 이상	대학공통 : 9학점	
	16주(640시간) 이상	대학공통 : 12학점	
	20주(800시간) 이상	16, 18학점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 2. 학점인정

#### 가. 공통사항

1) 학점인정학기 : **해외현장실습 수행학과 동일한 학기로만 학점인정 가능**

2) 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인정가능 학점 기준

가) 현장실습은 단기(학부·과 전공 해외현장실습 포함), 중기 및 장기 등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32~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소속학부(과)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따라 최대이수가능 학점 수 32학점 또는 36학점**

나) 현장실습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ex) 해외현장실습 최대 이수학점 36학점 중 - 전공 18학점, 나머지는 18학점은 일반선택)

나. 대학공통

- 1) 대학공통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됨
  - ※ 단, 실습직무 내용이 전공 관련인 경우에 한하여 실습시작 후 1주 내에 전공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완료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전공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해외현장실습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전공학점신청 방법 : [학생종합시스템-현장실습관리-학점인정심사]에서 신청서 작성
- 2)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을 전공으로 신청할 수 없는 자**
  - 가) 복수전공 이수자는 제1전공과 복수전공 모두에서 신청 불가(일반선택 인정)
  - 나)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에서 신청 불가(일반선택 인정)
  - 다) 편입생은 신청 불가(일반선택 인정)
  - 라) 기타 일반선택으로 지정된 해외현장실습
- 3) 장기 해외현장실습은 신청 학점 수에 따라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을 조합하여 학점인정 신청.
  - 가) 장기 해외현장실습 최대 인정가능 학점 수 : 16 또는 18학점  
(소속학부(과)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참조)
  - 나) 학점단위 등록 학생은 3,6,9학점 중에서 선택하여 인정 가능
  - 다) 학점조합 신청 산정기준은 3학점 단위 전공선택으로 우선 인정 후,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예,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16학점 취득인 경우 전공선택 12학점, 일반선택 4학점 취득 가능)

다.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구분별 학점 조합표

학점		9학점		12학점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16학점		18학점	
이수구분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이수 구분별 인정 학점	일반 선택	0	9	0	12	0	16	0	18
	전공 선택	3	6	3	9	3	13	3	15
		6	3	6	6	6	10	6	12
		9	0	9	3	9	7	9	9
		—	—	12	0	12	4	12	6
		—	—	—	—	16	0	15	3
—	—	—	—	—	—	18	0		

## 라.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

현장실습 구분	교과목명	과정개설	인정학점	실습요건
단기 해외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1)	계절학기	3학점	4주(16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2(1)			
	해외현장실습(4)			
	해외현장실습2(4)			
중기 해외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2)	계절학기	6학점	8주(32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2(2)			
	해외현장실습(5)			
	해외현장실습2(5)			
장기 해외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3)	정규학기	9학점	12주(48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2(3)		12학점	16주(64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6)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20주(80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2(6)			

※. 실습요건은 연속 4주 이상, 전일제(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하되, 기업의 특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연속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에 의거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 3.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신청시 주의사항

- 가. 해외 현장실습 기간 중에는 계절학기 또는 인터넷강좌 포함 모든 강좌 수강 불가
- 나. 해외현장실습을 계절학기 학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계절학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 6 학점 이내에서 신청 가능(휴학생은 학점신청 불가)
- 다. **장기 해외현장실습인 경우 모든 강좌 수강신청 불가(인터넷 강좌 포함)**
- 라. 모든 해외현장실습 교육과정[단기, 학부(과) 전공, 중기, 장기 해외현장실습]에 대한 수강신청 및 학점인정처리는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일괄 처리하므로, **참여학생은 별도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마) 현장실습은 재이수 과목이 아니므로 동일한 교과목 명(동일 학수번호)으로는 중복 이수 불가

## IV. 해외현장실습 참여학생 지원금

### 1. 해외현장실습 지원금

대학공통	실습기간	인정학점	지원금	성적평가
			대학공통	
단기 해외현장실습	4주(160시간) 이상	3학점	20만원	이수 P(Pass) / 미이수 F(Fail)
중기 해외현장실습	8주(320시간) 이상	6학점	40만원	
장기 해외현장실습	12주(480시간) 이상	9학점	180만원 ~ 200만원	
	16주(640시간) 이상	12학점	미국/호주/홍콩/유럽 200만원 기타지역(일본 등) 180만원	
	20주(800시간) 이상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별첨참조)	<b>※지원금은 변경될 수 있음</b>	

## 2.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가. 해외현장실습 이수 후 해당학기까지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미취득 한 자
- 나. **해외현장실습 수행학기에 휴학한 자**
- 다. 기타 우리 대학을 통해서가 아닌 외부 기업(관)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현장실습(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참가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라. 기타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서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

## 3. 지원금 지급 시기 : 해당학기 학점인정 학기말에 지원금 대상자 일괄지급

## V. 해외현장실습 등록금(수강료) 납부

### 1. 단기 및 중기 해외현장실습 참가자(학점인정학기 : 계절학기((ex)2019-2동계, 2020-1하계)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 1) 단기 해외현장실습(3학점) : 6만원
- 2) 중기 해외현장실습(6학점) : 12만원
- 3) 수강료 납부 계좌 : **대구은행 91000-1127-1790** (예금주 : 영남대학교 총장)
  - ※ 수강료 납부 시, 반드시 본인 학번 뒤 4자리와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입금자 확인가능 (계좌주 변경 불가 시, 본인 이름 입금에 한해 이체 가능)
  - 예) 21612345 김영남 : “2345김영남” 으로 입금 요망

### 2.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 [학점인정학기 : 정규학기(2020-2학기)] : 2020-2학기 등록금 납부

- 가. 장기 현장실습 교과목은 해당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
- 나. 학점단위 등록자의 경우 해당학기 신청학점에 따라 수강료(등록금)가 달라지므로 유의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등록금납부 → 학점단위등록 참조)
- 다. 등록금 납부 기한 : 2020-2학기 등록금을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 3. 납입금(수강료, 등록금)의 반환

- 가. 근거 : 학칙 제65조(납입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 오납된 금액 전액
  - 2)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나. 해외현장실습 수강료 반환 기준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당해학기 실습개시일 까지	납입금 전액
당해학기 실습개시일 전이라도 보험회사로 이미 상해보험료를 지출했거나 실습 진행에 따른 비용지출이 있는 경우	상해보험료 지출액 등을 제외한 금액
당해학기 실습개시일의 다음날부터 총 실습일수의 1/3까지	납입금의 2/3 해당액
총 실습일수의 1/3을 경과한 날로부터 총 실습일수의 1/2까지	납입금의 1/2 해당액
총 실습일수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 함

- ※ 다만, 반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간 중 본인의 사정(어학연수, 개인사정 등) 또는 잘못으로 실습을 중단 (포기, 취소, 허위발견)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납입금 반환 인정일자는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학생지원센터 101호)에 ‘해외현장실습 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일자리를 기준으로 함
- ※ 성적처리 후, 본인의 과오 로 인하여 취득학점 변경 시(6학점→3학점)에는 수강료 환불 절 대 불가

다.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름

## VI. 기타

### 1. 해외현장실습 불인정 및 취소

- 가. 해외현장실습 신청학점을 포함한 Pass학점이 졸업최저학점의 2분의 1을 넘게 될 경우
- 나. 해외현장실습생이 실습 기업(기관)과 협의 없이 실습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 다. 자격증 대여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라. 지도방문 시 약정된 실습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마. 전화 등으로 해외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할 때 2회 이상 정상적인 근무상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외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작성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 실습 시작일 전까지 등록금 또는 해외현장실습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라. 기타 해외현장실습 교육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2. 해외현장실습 제외 기업(기관)

- 가.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다만,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등
- 나.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연수가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또는 근로자 공급업체 등
- 다.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라. 노사분규,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적인 연수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기관)
- 마. 골프장 잔디 깎는 사람, 경비, 건물관리, 청소용역, 홀씨빙 등 단순노무직종
- 바. 야간(22:00~07:00) 근무 직종
- 사. 기타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기관) 및 직종

## VII. 유의사항

### 1. 해외현장실습 이수에 관한 유의사항

가. 단기, 중기, 장기 해외현장실습은 각 1회에 한하여 중복 이수할 수 있다.

나. 현장실습생은 아래의 최소 실습기간만큼 근무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결근이 발생 할 경우 결근일수(시수)만큼 추가 근무를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에 명시된 실습과정별(단기, 중기, 장기) 최소 실습기간(시수) 충족
- 실습기업(관)에서 지정한 실습기간 충족

다. 현장실습 이수 학기에 휴학, 수강포기 등의 사유로 학점취득 불가 시,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불가

- ※ 지원금 수령 후, 휴학 또는 수강취소 등의 사유로 학점취득 불가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 ※ 실습 중도포기, 개인사유 등으로 인한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취득이 불가할 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최소 3일 이내)로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에 통보바람. (실습시작 전 취소학생 포함)

라. 해외현장실습 이수기간 중에는 교내 타 교육프로그램(취업캠프, 리더십캠프, 해외자원봉사, 국제교류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중복 참여 불가. 추후 관련사실 적발 시,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취소 처리 및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바람.

마. 졸업예정자가 장기 해외현장실습을 신청한 경우에는 '졸업예정증명서'가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으므로,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으로 미리 연락바라며 접수 후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조치함

**바. 교내·외 장학금 지급 신청 관련 유의사항 (★★) (☎ 상세문의 : 장학팀 810-1141)**

- 1) 한 학기 수강과목 중 P/F 과목이 6학점을 초과(6학점까지는 포함되지 않음)하는 경우에는 교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 2) 한 학기 수강과목 전체 P/F 과목인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은 현장실습 이수 직전학기 성적평가 기준 반영하여 신청 가능

### 2. 해외현장실습 중 유의사항

가. 해외현장실습 시행 시, 첫째 날에 반드시 실습기업(기관)에서의 안전교육 안내요청하고, 실습기업 관리자에게 기업용 해외현장실습생 관리 평가 항목(학생 출근부, 실습생 평가,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 드린 후,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매뉴얼을 안내하여, 실습 종료일에 평가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안내바람

나. 해외현장실습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실습기업(기관)에 재물손상 등을 끼친 경우, 반드시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및 보험사에 빠른 시일 내로 연락하여, 관련 후속 업무처리(보험처리 등)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b>미국 자문위원 연락처</b>	성명 : Kathy Kim(캐티 김) 주 소 : 3660 Wilshire Blvd. # 336, Los Angeles, CA 90010 Phone : (Office) 213-456-6900, (Cell) 213-700-4849 e-mail : 2kathykim@gmail.com
------------------------	--

**VII. 문의처 :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주소 :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학생지원센터 101호,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해외현장실습 : 053-810-1049 E-mail : intern@yu.ac.kr

**VIII. 해외인턴 프로그램 운영기관 안내**

구분	주관기관(업체)	프로그램명	담당자 연락처
공 공 기 관	경북도청	경북해외인턴자문기업 인턴십(미국 J-1 인턴) (H-mart, Seoul Trading, Hotel Stanford 등)	경상북도 최상남 주무관 054-880-2735 csn0723@korea.kr
	한국무역협회	글로벌무역인턴십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박소영 대리 02-6000-5366 zero078@kita.net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재외동포재단 한상사업부 064-786-0287 gotgether@okf.or.kr
	국립국제교육원	미국 WEST 인턴(어학연수+인턴)	국립국제교육원 해외유학인턴팀(WEST) 02-3668-1461~1467/1448/1307 www.niied.go.kr/koreawest@korea.kr
에 이 전 시	ICCE*	미국 J-1 인턴(12개월) 협약기업 비자 대행 : 아진산업/SL/화신/ActiveUSA/하나팩토리	Danielle 팀장 danielle@icceusa.com www.icceusa.com
	IGE*	미국 J-1 인턴(12개월)	Sunnie Ko globaljob@igeworld.org Kakao: IGEinternship/GlobalJob www.igeworld.net
	글로벌커리어 솔루션 (KICEA)	태국 호텔, 미국 J-1인턴(6개월)	이충효 대표 070-5151-1600 chlee@gcsolution.co.kr https://globalcareersolution.com/
	엘프라우드*	미국 J-1 인턴	lproud@i-pround.com 031-715-2207
	플러스커리어 코리아*	미국 J-1 인턴	박대현팀장 02-561-6306 pluscareerdhcp@gmail.com
	JOB USA	의류패션학과 전용 미국 J-1 인턴 에이전시	John H. Lim(준팀) johnlimusa@naver.com
	홍콩한인상공회	홍콩한인상공회 대학생 인턴십, 워킹홀리데이(외식업) 모집	양정호 사무국장 (홍콩)+852 2544 1713 info@kocham.hk

참고 : \*표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민간해외취업알선지원사업 참여기관으로 민간알선지원장려금이 있습니다.  
 스폰서(에이전시) 기관은(홍콩한인상공회 제외)은 프로그램 알선비용이 있으며, 기관마다 그 비용이 다름.

## [참고자료 : 해외취업정착지원금 :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속방법 :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 메인 - 상단메뉴 - 사업소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착지원금, 민간알선지원

### 1. 지원내용

- 지원인원 : 4,400명(선진국 3,000명/ 지원금 우대국가 1,400명)  
※ 지원인원 달성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국가 및 신청 차수별 마감)
- 지원금액 : 지원금 우대국가(최대 800만원), 선진국 분류국가(최대 400만원)

### 2. 지원대상

- ① 만 34세 이하( '85. 1. 2이후 출생자)인 자
- ② 신청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합산소득이 6분위 이하인 자
- ③ 월드잡플러스 사전 구직등록(회원가입)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 3. 취업인정기준

- ① 취업비자 : 해당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가능하며 취업을 목적으로 발급된 비자
- ② 취업직종 : 단순노무직종 제외(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준용)
- ③ 임금수준 : 연봉 1,500만원 이상
- ④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이 1년 이상
- ⑤ 취업대상 업체 : 다국적기업, 현지로컬기업, 국내기업 해외법인, 한상 등

4. 신청 방법 : 「월드잡플러스 로그인→마이페이지→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제출서류를 이미지 파일(jpg, png 등. pdf는 제외)로 각각 업로드

### 5. 기타유의사항

- ① (접수순 지급)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는 검토 후 접수순으로 지급하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소진 시 즉시 마감함
- ② (온라인 접수) 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등 제반 절차는 홈페이지 월드잡플러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http://www.worldjob.or.kr)) 로그인→ 마이페이지→ 정착지원금 신청하기」 메뉴
- ③ (기타 사항) 지원금 신청서(증빙서류 포함)를 정해진 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취소 및 환수

■ 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일부 추출한 자료임.

■ 상세 내용은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 메인 - 상단메뉴 - 사업소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착지원금, 민간알선지원 - 정착지원금 Q&A게시판 참조

[별첨 1]

## 계절학기 현장실습 기간조건표(1)

- 해당학기에 따라 기간이 다름 -

▶ 학점인정학기 : 2020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단기 현장실습(4주 이상)		중기 현장실습(8주 이상)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 유의사항

- ① 실습기간의 경우 학생과 대학·기업(기관)이 협의하여 위 조건표의 최저 실습기간 이상으로 협약이 가능함.
- ② 현장실습은 평일 주5일 근무 원칙으로, 주말(토, 일요일)은 실습가능 기간에 포함될 수 없음.
- ③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기업(기관)의 휴가,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별첨 2]

### 학기제 현장실습 기간조건표(2)

- 해당학기에 따라 기간이 다름 -

▶ 학점인정학기 : 2020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장기현장실습 (12주 이상 → 9학점)		장기현장실습 (16주 이상 → 12학점)		장기현장실습 (20주 이상 → 16 or 18학점)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 유의사항.

- ① 실습기간의 경우 학생과 대학·기업(기관)이 협의하여 위 조건표의 최저 실습기간 이상으로 협약이 가능함.
- ② 현장실습은 평일 주5일 근무 원칙으로, 주말(토, 일요일)은 실습가능 기간에 포함될 수 없음.
- ③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기업(기관)의 휴가,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별첨 3] 학기 당 수강신청 가능학점**

대학	학부(과)	200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비고
		기준 학점	최 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기준 학점	최 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기준 학점	최 대 수강신청 가능학점	
문과대학	전체	18	21	16	19	16	19	
자연과학 대학	수학과, 통계학과	16	19	16	19	16	19	
	그 외 학부(과)	18	21					
공과대학	전체	16	19 (1학년:20)	16	19 (1학년:20)	16	19	
기계IT 대학	전체	16	19 (1학년:20)	16	19 (1학년:20)	16	19 (1학년:20)	
정치행정 대학	새마을 국제개발학과	-	-	18	21	18	21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b>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기준학점: 16</b> 최대 수강가능학점: 19
	군사학과	-	-	18	21	16	19	
	그 외 학과	16	19	16	19	16	19	2014학년도 이전 지역및복지행정학과 입학자 중 학칙에 따라 새마을국제개발학과로 소속 변경된 학생 포함
상경대학	전체	18	21	16	19	16	19	
경영대학	전체	18	21	18	21	16	19	
의과대학	의예과	20	24	20	24	20	24	
약학대학	전체	20	24	20	27	20	27	
생명응용 과학대학	전체	18	21	16	19	16	19	
생활과학 대학	의류패션학과	16	19	16	19	16	19	
	그 외 학부(과)	18	21					
사범대학	전체	18	21	18	21	18	21	
디자인미술 대학	전체	16	19	16	19	16	19	
음악대학	전체	18	21	16	19	16	19	
생명 공학부	생명공학부	16	19	16	19	16	19	
건축학부	건축학부	16	19 (1학년:20)	16	19 (1학년:20)	16	19	
기초교육 대학	정책과학전공	16	19	16	19	16	19	
	인문자율전공학부	18	21	16	19	16	19	

**[별첨 4] FAQ**

Q) 해외현장실습 신청구분별 자격요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구분	대학공통
신청학년	4개 학기 이상 이수자(미국 J-1 비자 인턴은 5개 학기 이상 이수자)
대상학부(과)	대학전체
공통	▶ 대학공통(단기, 중기, 장기) 및 학부(과) 편성 전공 해외현장실습은 각 1회씩만 이수할 수 있음. (기이수한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은 제외하여 신청 가능)
유의사항	▶ 같은 학부(과) 소속 학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신청자격 요건에 따라 해외현장실습 신청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외현장실습 신청 시, 본인 신청현황(신청 구분)을 명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기 바람.

Q) 복수전공자 및 편입학생은 대학공통 해외현장실습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점취득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전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일반선택으로만 학점취득이 가능합니다.

Q) 부전공자는 대학공통 해외현장실습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점취득이 가능한가요?  
부전공자는 부전공에서 전공선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제1전공에서는 전공선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해외현장실습 인정학점은 최대 몇 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한가요?  
국내현장실습과 해외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Q) 장기해외현장실습(20주) 이상 이수 시 몇 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장기해외현장실습(20주) 이상인 경우 학부(과)에 따라 16, 18학점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강신청 시 학부(과)별 및 입학년도에 따른 수강신청 기준학점이 적용됩니다.  
※ 장기해외현장실습(12주) - 9학점, 장기해외현장실습(16주) - 12학점

Q) 9개 학기 학점단위 등록학생인데, 2020-1학기 장기현장 실습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0-1학기 장기해외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단위 등록은 3, 6, 9학점으로 학점단위 등록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학생의 졸업학점 여부를 판단하여 최소학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기해외현장실습 기간 전체 실습하여야만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3학점을 신청한다하여 4주만 실습 할 수는 없습니다.

Q) 휴학생은 해외현장실습 참여가 가능한가요?  
휴학생은 휴학중인 학기에 학점인정이 되는 해외현장실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학점인정과 관계없는 경우 해외현장실습 참여는 가능합니다)

Q) 졸업유예 등의 사유로 해외현장실습 인정학점을 부분적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해외현장실습 인정학점은 부분적으로 취득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해외현장실습 20주 이수, 18학점 인정 신청자가 졸업유예를 하기 위해 15학점만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학점 그대로 성적취득이 됩니다.

Q) 학점인정은 언제 되는 건가요?  
2020학년도 1학기 장기 해외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9월경에 성적 처리가 됩니다.  
단 학점인정서류를 기간내 미제출 시 학점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해외현장실습 이수 후 이수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해외현장실습 이수 후 결과가 Pass인 경우,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해외현장실습관리] - [해외현장실습 이수확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별첨 5]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양식)

해외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신청 구분 (○ 표시)	구분	실습기간	신청학점	선택	
	단기 해외현장실습	4주 이상	3학점	(일반/전공)	
	중기 해외현장실습	8주 이상	6학점	(일반/전공)	
	장기 해외현장실습	12주 이상	9학점	(일반/전공)	
		16주 이상	12학점	(일반/전공)	
		20주 이상	16/18학점	(일반/전공)	
	학점인정 신청 시기	20 학년도 학기, 학점인정 해당없음( )			
	복수전공/부전공/편입생 여부	복수전공(O, X), 부전공(O, X), 편입생(O, X)			
<b>현장실습 이전 이수내용</b>	ex) 20XX년도 XX학기 일반/전공 X학점 이수				
인적사항	성명	이수 학기	/8개 학기		
	소속대학	학부(과)/전공			
	학번	휴대전화			
	Email	에이전시 명			
현장실습 신청내용	업체명	현장실습 관리자 담당부서			
	업종	현장실습 관리자 성명			
	대표자명	현장실습 관리자 직책			
	전화번호 (국가번호 포함)	현장실습 관리자 Email			
	종업원 수	현장실습 관리자 전화번호			
	근무지 주소				
	실습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내용				
현장실습 보험내용	보험사	보험가입번호			
<p>본인은 현장실습을 이수하면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교육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현장실습이 학교 교육과 연계되어 생산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습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현장실습 관련 보험(의무사항)에 따른 보상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의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현장실습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 . . 신청인 :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확인자 :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인)</p> <p>※ 장기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이 필요함.                  ※ 졸업예정자가 장기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하여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p>					

# 추천서

가. 성 명 :

나. 학 번 :

다. 소 속 :                      대학                      학과(부)                      학년

## <추천사유>

위 학생을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참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 붙임 : 1. 현장실습 참여학생 동의서 1부  
2. Job Offer Letter 혹은 Training Offer Letter 1부  
3. 해외현장실습(인턴) 비자 사본 1부(미국 J-1 비자 및 DS-7002 사본 포함)  
4. 여권사본 1부  
5. KOTRA 기준 해외현장실습 보험 가입증서 1부

# 현장실습 참여 학생 동의서

1. 해외현장실습 신청자 본인의 학적기본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학번		학년	성명		성별	
학적상태	재학 , 휴학 ( O 표시 )		예정상태	졸업예정 ( O , X )		
입학구분	신입학 , 편입학 ( O 표시 )		교적이수	( O , X )		전공
부전공	( O , X )		전공	( O , X )		전공

※ 위 본인은 해외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2. 아래 사유에 관해 정확하게 읽은 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하시면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외현장실습 신청 및 참여 후 개인 단순 사정에 의해 휴학, 중도 수강포기 등으로 해외현장실습 이수학기에 학점 취득을 못하는 경우	
	2. 근무 불참, 무단이탈, 중도포기 등으로 해외현장실습 프로그램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3. 해외현장실습 지도방문 시 약정된 실습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또는 2회 이상 정상적인 근무상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4. 해외현장실습 종료 후 7일 이내까지 출근부, 주간보고서, 최종보고서, 설문조사를 미작성한 경우 (※ 제출기한은 해외현장실습 진행 일정에 따라 조율 가능) 또한, 결과보고서 작성 내용이 많이 부실하여 성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학점 불인정 및 지원금 지원 불가	
	5. 대학공통 해외현장실습 신청자 중 복수전공 이수자는 두 개의 전공에서 모두 전공선택으로 학점인정 불가	
	6. 대학공통 해외현장실습 신청자 중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에서 전공선택 학점인정 불가	
	7. 대학공통 해외현장실습 신청자 중 편입생은 전공선택 학점인정 불가	
	8. 휴학생은 해외현장실습 교과목 신청불가	
	9. 계절학기 수강료 미납 또는 본인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납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0. 학교관련 규정 및 해외현장실습 참여기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1. 신청과목 및 학점인정학기 미 준수 (학생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명확히 확인 요망)	
확인	12. 해외현장실습 지원금 지원기준 및 금액 등의 내용에 대하여 안내문을 통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였습니다.	
확인	13.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해외현장실습 신청서 작성 시, 신청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작성하였습니다. (신청구분, 학점인정학기, 교과목명 등)	

20○○학년도 하계(동계) 및 20○○학년도 ○학기 해외현장실습 교육과정 참가 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해외현장실습 학점 불인정 및 지원금 지급 불가(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지원금 전액 반납)에 동의하며, 교내 운영 타 프로그램 참가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 등에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 Internship offer letter

The Host Company shall accept intern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offer letter.

Company Name			
Contact Person		Title	
E-mail Address			
Website			
Address			
Tel.			
Name of Intern			
Position			
Job Descriptions			
Stipend(After Tax)			
Work Hours	근무시간을 적어주세요 ((예)09:00~18:00, 5day a week(40 hours))		
Started Date		Expected Term	
Host Company's Signature			
Intern's Signature			

# Intern Evaluation Report

Name of Intern: \_\_\_\_\_

Major: \_\_\_\_\_

Date of Birth: \_\_\_\_\_

Period of Internship: \_\_\_\_\_

Start Date(dd/mm/yy)\_\_\_\_\_ Finish Date(dd/mm/yy)\_\_\_\_\_

Evaluation Rubric	Excellent	Good	Fair	Poor
<b>Meeting the deadline:</b> Is the participant completing work within the time limit?				
<b>Attitude:</b> Is the participant performing tasks confidently and accurately?				
<b>Capacity:</b> Is the participant able to pick up information quickly and come up with solutions and alternatives?				
<b>Work technique and application:</b> Does the participant possess relevant work techniques and apply them accordingly?				
<b>Risk and problem management:</b> Is the participant able to deal with a problem or risk at hand?				
<b>Teamwork:</b> Does the participant interact with colleagues well and buil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them?				
<b>Compliance:</b> Does the participant comply with rules and conditions of your organization (company) and respect authority figures?				
<b>Initiative and motivation:</b> Is the participant eager to take initiative and stay motivated?				
<b>Acceptance:</b> Does the participant take criticism without being offensive or defensive and use feedback constructively?				
<b>Supervisor Comments</b>				

※ Contact information of the evaluator (the supervisor of the student)

1. Name:
2. Job title:
3. Name of organization (company):
4. Address of organization (company):
5. E-mail/Office Phone Number: \_\_\_\_\_ /

Signature: \_\_\_\_\_

# 해외현장실습 포기 신청서

## 1. 포기자 인적사항

대 학		학부(과)		전공	
성 명		학년		학번	

2. 실습기관(업체) (국가 : )

3. 실 습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포기 신청일

5. 포 기 사 유 (구체적으로 작성)

6. 확인사항 (확인 후 동의시 에 표시)

수강료 반환기준 확인

실습 포기로 인해 현장실습 학점 취득 불가 시  
지원금 지원 불가 안내 확인

위와 같은 사유로 20 학년도 00학기 해외현장실습 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학부(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 6]

영남대학교 해외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

- 제정 2001. 7.10. 교무위원회
- 개정 2002.10.22. 교무위원회
- 개정 2003. 7. 8. 교무위원회
- 개정 2010.12.14. 교무위원회
- 개정 2012. 5.22. 교무위원회
- 개정 2012. 8.21. 교무위원회
- 개정 2012.12.18. 교무위원회
- 개정 2015. 4.14. 교무위원회
- 개정 2017. 2.21. 교무위원회
- 개정 2017. 8.29. 교무위원회
- 개정 2018. 2.28. 직권 수정
- 개정 2019.11.12. 교무위원회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영남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35조제3항의 해외현장실습수업(이하 "해외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4.,2019.11.12.>

제2조(해외현장실습기관의 범위) 이 규정에 의한 해외현장실습기관의 범위는 우리 대학교와 학생의 해외현장실습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기관에 한한다. 다만, 우리 대학교와 학생의 해외현장실습에 관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관이더라도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장이 허가한 기관은 포함될 수 있다.<개정 2010.12.14.>

제3조(편성) 해외현장실습은 3개의 과정으로 편성하며, 각 과정별 편성내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2.10.22.,2003.7.8.,2010.12.14.,2012.5.22.,2012.12.18.,2017.8.29.,2019. 11.12.> [제목 개정 2019.11.12.]

제4조(이수) ① 이 규정에 의한 해외현장실습은 3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해외현장실습과 국내 현장실습을 합하여 3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12.14.,2012.5.22., 2017.8.29.>

② 삭제<2010.12.14.>

③ 삭제<2002.10.22.>

④ 해외현장실습기간의 5분의 4 이상을 이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기간을 당해 과정에 포함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2.5.22., 2019.11.12.>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대회 또는 회의에 참석한 때

2. 징병검사, 징·소집에 응할 때(현역 복무기간은 제외)

3. 천재지변으로 정상적인 교육수행이 어려울 때

4. 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육 참여로 잔여기간 실습이 어려울 때

⑤ 단기, 중기, 장기 해외현장실습은 각 1회에 한하여 중복 이수할 수 있다.<신설 2012.5.22., 개정 2012.12.18.,2017.8.29.>

[제목 개정 2019.11.12.]

제5조(해외현장실습과정의 변경) ① 삭제<2002.10.22.>

② 삭제<2002.10.22.>

제6조(해외현장실습의 개설) ① 해외현장실습은 총장이 개설하며, 필요에 따라 학장의 요청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9.11.12.>

② 삭제<2019.11.12.>

③ 학장이 해외현장실습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2.>

1. 개설과정 및 학점 수(공통)
2. 해외현장실습기간 및 실습시간(공통)<개정 2019.11.12.>
3. 학생의 실습지원서 접수기간(공통)
4. 해외현장실습교육을 담당할 지도교수
5. 해외현장실습의 기관 및 관리자
6. 기타 개설에 필요한 사항

[ 제목 개정 2019.11.12.]

제7조(신청자격) 해외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2.>

1.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다만, 졸업예정학기 해당자는 졸업사정 전까지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2.10.22.,2012.5.22.,2012.12.18.>
2. 우리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개정 2010.12.14.>
3. 해당 해외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어학능력 등의 수학요건을 갖춘 자
4.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8조(신청 및 선발) ① 해외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대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현장실습 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10.22.,2010.12.14.,2012.5.22., 2015.4.14., 2019.11.12.>

② 총장은 우리 대학교 및 해외현장실습기관의 선발 기준에 의거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현장실습생을 선발한다.<개정 2002.10.22.,2010.12.14.,2012.5.22., 2015.4.14., 2019.11.12.>

③ 삭제<2002.10.22.>

④ 해외현장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등록금(계절학기 수강료)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계절학기 수강료)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이 취소된다.<신설 2019.11.12.>

[ 제목 개정 2019.11.12.]

제9조(수강신청) ① 해외현장실습 기간에는 해외현장실습을 제외한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단, 대학 간 협약에 의한 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0.12.14., 2012.5.22.>

② 삭제<2012.5.22.>

③ 삭제<2019.11.12.>

④ 취업처는 해외현장실습 이수예정자를 수강신청 기간 전에 교무처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2.10.22.,2010.12.14.,2012.5.22.,2015.4.14.,2019.11.12.>

⑤ 해외현장실습 과목은 정규학기(학점단위등록 포함) 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2.5.22.>

⑥ 단기 및 중기 해외현장실습은 계절학기 과정으로 신청한다.<신설 2012.5.22.,개정 2019.11.12.>



제10조(수강기간) ① 삭제<2012.5.22.>

② 삭제<2002.10.22.>

③ 수강기간 중 본교 총장의 허가 없이 실습을 포기하거나 휴학할 수 없다.<개정 2019.11.12.>

제11조(실습지도) 실습생의 지도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해외현장실습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개정 2019.11.12.> [제목 개정 2019.11.12.]

제12조(평가와 학점인정) ① 취업처장은 실습생의 현장실습일지, 현장실습기관의 현장실습평가서 등을 종합하여 해외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교무처에 통보한다. 다만, 전공과목으로 신청한 해외현장실습 과목은 해당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평가하여 취업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2.10.22.,2010.12.14.,2012.5.22.,2015.4.14.,2019. 11.12.>

② 삭제<2010.12.14.>

③ 교무처는 취업처에서 학점인정 요청한 서류를 검토한 후 우리 대학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되 성적 인정은 P(Pass), F(Fail)로 처리한다.<개정 2010.12.14.,2012.5.22.,2012.12.18.,2015.4.14., 2019.11.12.>

④ 삭제<2010.12.14.>

⑤ 삭제<2010.12.14.>

⑥ 해외현장실습으로 이수한 학점은 우리 대학교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이수구분은 일반선택으로 한다. 다만, 해외현장실습시작 전에 전공학점인정 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속 학부(과)·전공교수 회의를 거쳐 해외현장실습을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14.,2012.5.22., 2012.8.21.,2012.12.18.,2019.11.12.>

⑦ 장기 해외현장실습을 제6항 단서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현장실습 인정 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신설 2012.12.18.>

⑧ 현장실습 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국내현장실습과 해외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5.22., 개정 2012.12.18.>

제13조(지원조직) ① 삭제<2012.8.21.>

② 삭제<2002.10.22.>

③ 삭제<2002.10.22.>

④ 삭제<2002.10.22.>

제13조의2(위원회) ① 삭제<2019.11.12.>

② 삭제<2019.11.12.>

③ 삭제<2019.11.12.>

④ 삭제<2019.11.12.>

⑤ 삭제<2019.11.12.>

⑥ 삭제<2019.11.12.>

⑦ 해외현장실습에 관한 중요사항 은 영남대학교 취·창업진로위원회에서 심의한다.<신설 2019.11.12.>

[제목 개정 2019.11.12.]

제13조의3(해외현장실습 자문위원단) ① 해외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해외현장실습 자문위원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신설 2012.8.21.>

- ② 자문단은 총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위원(자문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하며, 자문단장은 총장이 지명한다.<신설 2012.8.21.>
- ③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단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8.21.>
- ④ 자문단은 해외현장실습 운영과 관련된 자문에 응하며, 해외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2.8.21.>
- ⑤ 자문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2.8.21.>

제14조(해외현장실습생의 의무) ① 삭제<2019.11.12.>

- ② 실습생은 해외현장실습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4.,2019.11.12.>
  1. 실습기간 중에는 반드시 우리 대학교에서 승인한 실습기관에서 실습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4.,2019.11.12.>
  2. 주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현장실습지원시스템에서 작성하고, 평가표[별표 2], 현장실습 출근부, 급여표 및 출입국 근거서류를 해외현장실습 종료 후 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14.,2019.11.12.>
  3. 우리 대학교 학칙, 해외현장실습기관의 내규 및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2.>
  4. 해외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2.>
  5. 해외현장실습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우리 대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4.>

제15조(해외현장실습의 의무위반자조치)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2.5.22., 2019.11.12.>

- 1. 해외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개정 2019.11.12.>
- 2. 고의적으로 해외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개정 2019. 11.12.>
- 3. 고의적으로 해외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개정 2019.11.12.>
-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개정 2019.11.12.>

제16조(협약사항) 해외현장실습은 학생과 외국 실습기관과의 고용계약에 의한다.

제17조(협약과의 관계 등) ① 이 규정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등 관련 규정과 해외현장실습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0.12.14.,2019.11.12.>

-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 해외현장실습기관과 체결한 협약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0.12.14.,2019.11.12.>

제18조(기타) 기타 해외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2.8.21.>

부칙(2001. 7.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0.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7. 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12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2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개정 규정에 따른 해외현장실습 이수는 2012학년도 하계 해외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 8.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7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12학년도 동계 해외현장실습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4.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28.)

제1조(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직권 수정)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1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개정 2017.8.29.,2019.11.12.>

현장실습 구분	교과목명	과정개설	인정학점	실습요건
단기 해외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1) 해외현장실습2(1)	계절학기	3학점	4주(16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4) 해외현장실습2(4)			
중기 해외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2) 해외현장실습2(2)	계절학기	6학점	8주(32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5) 해외현장실습2(5)			
장기 해외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3) 해외현장실습2(3)	정규학기	9학점	12주(480시간) 이상
			12학점	16주(640시간) 이상
	해외현장실습(6) 해외현장실습2(6)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20주(800시간) 이상

비고

1.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학업이수에 관한 규정」 제3조제8항에 따른다.
2. 장기 해외현장실습은 인정학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고,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3. 해외현장실습은 이수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 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외현장실습(1), 해외현장실습2(1), 해외현장실습(2), 해외현장실습2(2), 해외현장실습(3), 해외현장실습2(3)으로 인정한다.
  - 나. 제1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외현장실습(4), 해외현장실습2(4), 해외현장실습(5), 해외현장실습2(5), 해외현장실습(6), 해외현장실습2(6)으로 인정한다.
4. 장기 해외현장실습을 제12조제7항에 따라 전공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

학점	9학점		12학점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전공 선택	일반 선택	16학점		18학점		20학점	
이수구분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전공 선택	일반 선택
이수구분별 인정학점	3	6	3	9	3	13	3	15	3	17
	6	3	6	6	6	10	6	12	6	14
	9	0	9	3	9	7	9	9	9	11
	-	-	12	0	12	4	12	6	12	8
	-	-	-	-	16	0	15	3	15	5
-	-	-	-	-	-	-	18	0	18	2

5. 실습요건은 연속 4주 이상, 전일제(1일 8시간) 기준으로 운영하되, 기업의 특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대학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연속 4주 이상, 전일제(1일 6시간 이상))에 의거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